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창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84

발의연월일: 2024. 9. 5.

발 의 자:한창민·민병덕·백승아

이강일 · 정을호 · 황운하

박정현 · 김남희 · 서미화

윤종군 · 용혜인 · 민형배

김 윤・김용민・박홍배

이용우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 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의 범위를 공무원,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, 국립· 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사립학교도 국립·공립 학교와 유사하게 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교직원 등이 사적 이해관계를 이용한 의사결정을 할 우려가 있으며,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기 위한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 현행법상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현행법상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 인의 임직원을 추가하여 사립학교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 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2조제1호·제2호 및 제5조제1항제12호).

법률 제 호
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바목 중 "「고등교육법」"을 "「고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"으로, "국립·공립 학교"를 "학교나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"국립·공립 학교"를 "학교"로, "교직원"을 "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"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2호 중 "국립·공립 학교"를 "학교"로, "수행평가"를 "수행평가·논문심사·학위수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 "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목	1	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			
관·단체를 말한다.			
가. ~ 마. (생 략)	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		
바. 「초・중등교육법」,	바 <u>「고</u>		
「고등교육법」 또는 그	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		
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	법		
치된 각급 <u>국립·공립 학</u>			
<u> 11</u>	학교나 「사립학교법」에		
	<u> 따른 학교법인</u>		
2. "공직자"란 다음 각 목의 어	2		
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			
말한다.	<u>.</u>		
가.・나. (생 략)	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		
다.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	다		
급 <u>국립·공립</u> 학교의 장	<u>학교</u> <u>교직원 및</u>		
과 교직원	학교법인의 임직원		
3. ~ 7. (생 략)	3. ~ 7. (현행과 같음)		
제5조(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	제5조(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		
회피·기피 신청) ① 다음 각	회피·기피 신청) ①	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			
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			

관련자(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 다)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 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 청하여야 한다.

- 1. ~ 11. (생략)
- 12. 각급 <u>국립·공립 학교</u>의 입 학·성적·<u>수행평가</u>에 관계 되는 직무
- 13. ~ 16. (생략)
- ② ~ ⑤ (생 략)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12 <u>학교</u> <u>수</u>
<u>행평가 · 논문심사 · 학위수여</u>
13. ~ 1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